

●**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-48호**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4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**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**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강○석 등 7명(법인포함)(납부기한 : 2026.5.29.(금))

3. 게재(게시)기간 : 2026.4.24. ~ 2026.5.8.(공고일로부터 14일)
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 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  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(☎ 02-6735-8126 / 팩스 : 02-6735-8144 / E-mail : oasis79@korea.kr)

행정처분 대상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 (법인번호)	고지주소	법 령	과태료 (만원)	스팸번호	광고
1	강○석	1974.○.11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***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, 제4항, 6항	750	010-****-9212	홍보 대행
2	다○ ○우정	110111- 73○○○85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***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, 제4항, 6항	375	070-****-3756	부동산
3	임○진	1986.○.15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길 ***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	750	010-****-2082	홍보 대행
4	정○필	1981.○.8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천로7번길 ***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	375	15**-**02 등 2개	부동산
5	정○조	1991.○.21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***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, 제4항	375	010-****-6557	부동산

6	최○석	1982.○.9	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4길 ***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	750	010-****-7309	과외 홍보
7	한○희	1993.○.27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43번길 ***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	750	010-****-5431	부동산